

# 한동대학교 총동문회 선거세칙

•2013. 5. 21. 제정

•2015. 4. 9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세칙은 한동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'본회'라고 한다) 정관 제 14 조에 의하여 총동문회 정회원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- ① 이 세칙은 본회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.
- ② 이 세칙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### 제 3 조 (선거의 원칙)

본회의 모든 선거는 한동대학교 동문의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 4 조 (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)

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, 후보자를 지지·선전하거나 이를 비판·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 5 조 (임원의 중립의무)

현직 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 6 조 (선거관리)

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·관리한다.

#### 제 7 조 (임기개시)

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 시부터 개시된다. 다만,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.

###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

#### 제 8 조 (선거권)

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.

#### 제 9 조 (피선거권)

본회의 정회원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.

1. 본회의 정회원 3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2. 1 호의 추천은 복수추천도 가능하다.

###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

#### 제 10 조 (선거기간)

- ① 본회의 모든 선거기간은 14 일 이내로 하되, 최소 7 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한다.
- ② “선거기간”이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
#### 제 11 조 (선거일)

-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정기총회일로 한다.
-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80 일 이내에 실시하되, 늦어도 선거일 전 30 일까지는 총동문회장 또는 총동문회장대행자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장 선거인명부

#### 제 12 조 (명부작성)

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매 선거 시 선거일 전 14 일까지 제 8 조에 따른 당해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#### 제 13 조 (명부작성의 감독 등)

-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 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.

#### 제 14 조 (이의신청과 결정)

-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13 조 제 2 항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·결정하고,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,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 15 조 (명부의 확정과 효력)

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7 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.

### 제 5 장 선거 관리 위원 회

#### 제 16 조 (설치)

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는 5 인으로 한다.

#### 제 17 조 (직무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세칙에 의하여 본회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세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

#### 제 18 조 (위원의 임명 및 위촉)

선거관리위원회는 총동문회장이 임명하는 3 인,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2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19 조 (위원장 및 상임위원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 인을 둔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#### 제 20 조 (위원의 임기)

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
#### 제 21 조 (위원의 해임사유)

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
1.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
2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
3.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

#### 제 22 조 (위원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#### 제 23 조 (회의소집)

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 5 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

회의소집을 요구한 5분의 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24 조 (위원의 대우 및 경비의 부담)

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총동문회가 부담한다.

1.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선거의 준비·실시에 필요한 경비

#### 제 25 조 (기타사항)

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
## 제 5 장 후보자

#### 제 26 조 (후보자 등록)

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0 일(이하 “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”이라 한다)부터 10 일간(이하 “후보자등록기간”이라 한다)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후보자 등록원서
2. 제 9 조 제 1 호의 추천서
3. 졸업증명서
4. 출마용 사진
5. 출마 소견문
6. 이력서

#### 제 27 조 (등록무효 및 등록신청 거부)

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.

② 후보자가 제 26 조 제 2 항의 각 호의 구비서류를 후보자 등록기간까지 제출하지

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미비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#### 제 28 조 (후보자의 사퇴)

-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종료시까지 사퇴할 수 있다.
- ②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, 후보자는 제 10 조 제 2 항 각 호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없다.

### 제 6 장 선거 운동

#### 제 29 조 (정의 등)

① 이 세칙에서 “선거운동”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- 1.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- 2.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- 3. 특정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)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세칙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 30 조 (선거운동기간)

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투표일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#### 제 31 조 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
현직 임원직에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#### 제 32 조 (선거운동 방법)

선거운동의 세부적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
#### 제 33 조 (후보자 비방금지)

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,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·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신분·직업·경력 등 재산·인격·행위·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,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

없다. 다만,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 34 조 (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)

①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는 본회의 선거권자나 그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기부행위
2. 소액의 기부행위
3. 사회통념상 당선의 목적이 없는 기부행위
4.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.

②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권자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
2. 일반 선거권자를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

## 제 7 장 선거비용

#### 제 35 조 (선거비용의 정의)

이 세칙에서 “선거비용”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·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.

#### 제 36 조 (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
2.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기탁금
3. 제 34 조 제 1 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
4.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

#### 제 37 조 (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)

① 선거비용제한액은 “선거권자의 수 × 500 원”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산정비율을 달리하여 그 선거비용제한액을 증감할 수 있다.

#### 제 38 조 (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)

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 8 장 투 표

#### 제 39 조 (선거방법)

- ① 선거는 직접, 비밀, 보통, 평등선거로 한다.
- ② 투표는 기표 및 전자투표로 실시한다.
-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# 제 40 조 (투표소 등의 설치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·투표함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후보자·선거사무장은 투표소의 설치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 41 조 (투표안내문의 발송)

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·투표소의 위치·투표할 수 있는 시간·투표할 때에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 일까지 모든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.

#### 제 42 조 (투표의 제한)

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.

#### 제 43 조 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

- ①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·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한다. 이하 “신분증명서”라 한다)을 제시하고 본인임을



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

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한다.

③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 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⑤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
⑥ 투표용지의 날인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 44 조 (기표방법)

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”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 제 45 조 (투표함 등의 봉쇄·봉인 및 송부)

①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마친 때에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·봉인하여야 한다.

② 투표관리관은 제 1 항의 봉쇄·봉인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
#### 제 46 조 (전자투표의 방식)

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기표는 제 43 조, 제 44 조, 제 45 조, 제 46 조의 기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.

## 제 9 장 개표




#### 제 47 조 (개표관리)

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.

제 48 조 (개표의 절차)

-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.
- ②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 선거관리위원은 개표를 진행한다.

제 49 조 (무효투표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  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  2.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  3.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
  4.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  5. “”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  6.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.
  1. “”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“”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로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
  2. 한 후보자 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
  3.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
  3.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
  4. 기표한 것이 전사(轉寫)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
  5.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

제 50 조 (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)

-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.
-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.

제 51 조 (개표참관 및 관람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.

## 제 10 장 당선

### 제 52 조 (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

- ① 본 회의 모든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이를 총동문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가 1 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②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,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### 제 53 조 (피선거권상실로 당선무효 등)

-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.
- ② 당선인이 임시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.
  1. 당선인이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
  2. 제 27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때

## 제 11 장 재선거 및 재투표

### 제 54 조 (재선거)

-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
1. 후보자가 없는 때
  2. 당선인이 없거나, 당선인이 당선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
  3. 최고득표자가 2 인 이상일 때 (최고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한다)
  4. 선거의 무효사유가 있는 때

### 제 55 조 (선거의 연기)

- ①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동문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.

- ② 제 1 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,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.
-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총동문회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6 조 (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)

- ①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·명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.

## 제 12 장 세 칙 의 개 정

제 57 조 (세칙의 개정)

세칙의 개정은 본 세칙 22 조의 의결과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